# 2023학년도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 총회 연수자료

# 어린이의 꿈과 바른 인성을 알차게 가꾸는 한여을 행복교육



한 여 울 초 등 학 교

# ◈ 차 례 ◈

│. 학교 현황 ]
Ⅱ. 교육비전 및 목표 4
Ⅲ. 2023학년도 한여율초 교육활동 계획 5
IV. 각종 연수 ······ 7
1. 불법찬조금·품 근절 및 청탁금지법 ······· 7
2. 교권 침해 예방 교육 9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11
4.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안내15
5.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7
6. 학교 폭력 예방 교육 20
7. 출결 및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안내 22
8. 학생 봉사 활동 운영 계획 23
9. NEIS 학생·학부모 서비스 이용 안내 ······ 24
10.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학교 전자계약 추진 안내 25
1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6
12. 학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안내 28
13. 복합특수학급, 장애인차별금지 및 이해에 대한 안내 30
V. 학부모 총회 안건 자료 ···································
1. 2022학년도 학부모회 안건 보고 32
2. 2023학년도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 학교 현황

#### 1. 일반 현황

🧔 학교명 : 한여울초등학교

🥯 소재지 : 경기 시향시 능곡군자로 2 (군자동)

홀 홈페이지 : http://www.hanyeoul.es.kr

👊 학교 전화번호

▶ 교무실 : 031-365-8003 ▶ 행정실 : 031-365-8008~9 ▶ FAX : 031-365-8005

#### 2. 학교 연혁

한여올초등학교 설립 인가
초대 최보중 교장선생님 취임
한여울초등학교 개교
초등 일반 25학급 설립인가 16학급 학급편성
초등 특수 6학급 설립인가 4학급 학급편성
병설유치원 7학급 설립인가 6학급 학급개원
초등 일반 19학급 특수 6학급 학급 편성
제2대 유선희 교장선생님 취임
초등 일반 22학급 특수 6학급 유치원 6학급 편성

#### 3. 학생 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특수	유치원
	5학급	4학급	3학급	3학급	4학급	3학급	22학급	6학급	6학급
학생수	140	100	92	93	96	89	610	23	98

#### 4.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장	교 감	원 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하때바리	교과전담	보건교사	특수교사	평양교사	사서교사	유치원교사	유치원방과후교사	행정두무관	시설주무관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과학실무 <b>사</b>	특수지도사	조리 사	조리실무사	<b>톨</b> 봄전담사	시설미화원	<b></b>	사회복무요원	계
인원	1	1	1	1	9	22	4	1	11	1	1	7	4	3	1	1	1	1	2	1	4	3	1	1	2	79

#### 5. 시설 현황

구분	교 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다 함 께 꿈 터	따시다	인쇄실	늉송길	미술실	휴 게 실	동행반	치 료 지 원 실	교구실	심리안정실	특 별 지 원 실	명어실	다목적실	준비실
실수	25		_	_	_	_		_	_	_	•		_	١.		_			

구분	돌봄교실	시설관리실	전 산 실	상담실	음악실	과 학 실	도 서 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각정헬리	조리실	급식관리실	체 <del>요</del> 관	학 부모회 실 학 운 위 실	창 고	화장실	실 과 실	숙직실	Ä
실																			98

#### 6. 학교 상징



### コエ

교표의 노란색은 노란 해바라기와 같이 서로를 바로보며 존중하여 자신과 친구에게 자부심을 보일 수 있음음 나타낸다. 교표 안의 초록 원은 올곧은 소나무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즉 자궁심을 의미함.



# 교목 소나무

올곧고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처럼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여울 친구들을 상징함.



### 교화 해바라기

해바라기의 꽃말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해바라기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한여울 친구들을 상징함.

#### 7. 한여울초 교가

# 한여울초등학교 교가

작사 최보중 작곡 김미란



맑고맑게 빛이나는 꿈의동산 에 초롱초롱 빛이나는 꿈의동산 에



샘 - 솟 는 희 망품고 - 예쁜 꿈을키워가 네 공-사 이좋게서 로돕는 - 바른 인성피어나 네 착한



감 - 과사랑으 로 아름 답게꿈이자 라 세 생 - 각착한행 동 아름 답고크게자 라 세





# 교육비전 및 목표

교육비전	어린이의	꿈과 바른 <mark>인성</mark> 을 알차게 가꾸는 <b>한여을</b> 행복교육
교 훈		함께 배우고 사이좋게 지내자
교육철학	미래인재를 키웁니다 참여권을 부여하며, 된 개인으로 활동하고	는 미래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u>자율권</u> 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교육공동체가 <u>협업</u> 을 통하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독립 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학교교육공동체의 <u>책무성</u> 을 함과 바른 인성을 알차게 가꾸는 <u>한여울행복교육</u> 을 지향합니다
교육방향	'학생	· '중심교육' '체험중심교육' '역량중심교육'
교육목표	● 자율 ● 창의 ● 건강 ● 예절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가꾸어 가는 지주적인 어린이  지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고 심신이 건강한 어린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절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  ● 예절인
구현중점	<b>/ \                                   </b>	화 하시주시 교육화장 운영 🍎 건강교육 강화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구하는 교육상	학생 상 교 직 원 상 학 부 모 상 학 교 상	배운 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 학생과 소륭하며 학생의 배움을 함께 촉진하는 교직원 학교를 신뢰하고 학교교육공동체에 신나게 협력하는 학부모 민주적인 학교교육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 자기 관리 ● 강동체의		교육 핵심 역량       ● 지식정보처리역량       ● 진로 개발 역량         의사소통 역량       ● 심미적 감성역량       ● 정보 활용 역량

특색 교육 핵심 과제

독서교육

문화예술교육

자율과제	문예교육활동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하기
시절씨세	문화예술(학급별 동아리 10시간), 학년군별 음악 동아리 17차시 이상



# 2023학년도 교육활동 계획

# 1. 시정표

교시	1~2학년	동행반(1~6학년)	교시	3~6학년
등교 및 아침활동(독서)	8:40~9:00	8:40~9:00	등교 및 아침활동(독서)	8:40~9:00
1교시	9:00~9:40	9:00~9:40	1교시	9:00~9:40
쉬는 시간	9:40~9:50	9:40~9:50	쉬는 시간	9:40~9:50
2교시	9:50~10:30	9:50~10:30	2교시	9:50~10:30
쉬는 시간	10:30~10:40	10:30~10:40	쉬는 시간	10:30~10:40
3교시	10:40~11:20	10:40~11:20	3교시	10:40~11:20
쉬는 시간	11:20~11:30	11:20~11:30	쉬는 시간	11:20~11:30
4교시	11:30~12:10	11:30~12:10	4교시	11:30~12:10
점심시간(50분)	12:10~13:00	12:10~13:00	쉬는 시간	12:10~12:20
5교시	13:00~13:40	13:00~13:40	5교시	12:20~13:00
쉬는 시간		13:40~13:50	점심시간(50분)	13:00~13:50
6교시		13:50~14:30	6교시	13:50~14:30
하교시간	※ 학년	별 교육과정 운영어	┃ 따라 하교 시각은 달라질	수 있음.

# 2023학년도 한여울초 학사일정

# 한여울초등학교

\*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교육활동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5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 시 여름방학식(7.25일) 변경 운영.

												*	: 5월	29			망	후일	지	정	પ વ	름빙	학식	(7.2	5일)	변경	병 운
		3월	(	22일	<u> </u> )				4월	(2	0일)					5월	(2	21일	<u> </u> )			(	5월	(2	1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톼	일	월	화	수	목	급	토	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Ш			1	2	3	4							1		1	2	3	4	5	6					1	2	3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12	_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del> </del>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mark>21</mark>   22   23   24   25   26   <mark>27</mark>					2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23/ 30   24   25   26   27   28   29   28   29   30   31   1   1   1   1   1   1   1   1										25	26	27	28	29	30					
2	(화)	시	업식,	입학	식		<b>■</b> 15	학기 호	학부모	상담.	주간:	4.10-4	4.14							):5.4	■ 현	충일:	6.6				
		<u>:</u> 3.1		1 13 4	÷. Դ									_	· 년 1린이		학:5.4 5.5	4~5.7									
■ 1 ■ <u>5</u>	학기 ¦부모	학급 L총회	· 임원 : 3.1	년 선물 <mark>5</mark>	<u>≧</u> : 3.	9								<b>■</b> 5	처님	오신	7.5 <b>날</b> : 5 유대회		: 51·	~12							
			7월	(	16일	1)			85	길	(109	21)			162		기의 9월		19일				10월	(	19일	1	
익	월	화	<del>'로</del> 수	목	<u>.</u> 금	토	일	월	화	<b>로</b> 수	목	<b>-</b> -	토	인	월	화	<del>'로</del>	목	<u>:/</u> 급	<u>.,</u> 토	인	월	. <b>항골</b> 화	수	목	<i>,</i> 금	토
F				7		1			1	2	3	4	5				-	7	1	2	1	2	3	4	5	6	7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9	10	11	12			15	13	14	15	16	17	18	19	10	11		13	14	15		15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2	20	21	22	23	24	25	26	17	18	-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9		28	29	30	31			24	25	26			29			30	31				
30	31												_	_ ·									UZESO	HOI.	10.2		
24	4(월)	1.	i름 병 ~2학	}학식( 년 4표	급식)			18(월)	,	2학기 1~2학	개학4 년 4년 년 5년	(급식)	) [[				9.28~ 방학:		3~10	3		'교장지  천절:		집절.	10.2		
		3	~6학	년 5교	!시	<u> </u>	■ 7½	·복절:	0 15	3~6≊	학년 5 <u>교</u>	교시					8 - 수업					글날:					
7.2	25-8.	.17	여름	방학기	<mark>간(24</mark>	일)	■ 2 <sup>5</sup>	<b>국교</b> . 학기 호	<b>8.13</b> 학급 2	임원 선	<u> </u> 출: 8	.24														10.4~	6
		<u>‡</u> : 7.1																			<b>■</b> 현	장체현	남학습-	주간:	10.16	~11.1	
<b>1</b>	학기	총 4	수업일																								
		11	_		22일				12월	<del> </del>	(209					2024		1월		일)			24년			<del>-</del>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소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4						1	2		1	2 I	<b>つ</b> 1	4	5	6						2	3
$\vdash$	_			2	3		_								-		3	_		_	_	_	_		1	_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2	13	14	8 15	9 16	10 17	11 18	10	11	12	13	14	15	9 16	7 14	15	9 16	10 17	11 18	12 19	13 20	11	12	13	14	8 15	9 16	10 17
-	_	<del></del>	8	9	10 17	11	10 17		-		<del></del>		9	7 14 21	$\overline{}$	9 16	10	11	12	13	_			_	8	9	10
12	13	14	8 15	9 16	10 17	11 18	10	11	12	13	14	15	9 16		15	9 16	10 17 24	11 18	12 19	13 20	11	12	13	14	8 15	9 16	10 17
12 19 26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력개	8 15 22 29 <sup>발평</sup>	9 16 23 30 가기간	10 17 24	11 18 25 1~)	10 17 24 31	11 18 25	12 19 26	13 20 27	14 21 28	15 22 29	9 16 23 30	21 28	15 22	9 16 23 30	10 17 24 31	11 18	12 19	13 20	11 18 25 ■ 설	12 19 26 날연후	13 20 27 27	14 21 28 ~2.11	8 15 22 29	9 16	10 17
12 19 26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8 15 22 29 <sup>발평</sup>	9 16 23 30 가기간	10 17 24	11 18 25 1~)	10 17 24 31	11 18	12 19 26 <del>8</del> 2 1~5	13 20 27	14 21 28 업식(다	15 22 29	9 16 23 30	21 28	15 22 29	9 16 23 30	10 17 24 31	11 18	12 19	13 20	11 18 25 ■ 설	12 19 26 날연휴 체공휴	13 20 27 후: 2.9 후일: 2	14 21 28 ~2.11	8 15 22 29	9 16	10 17
12 19 26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력개	8 15 22 29 <sup>발평</sup>	9 16 23 30 가기간	10 17 24	11 18 25 1~)	10 17 24 31 290	11 18 25 (금)	12 19 26 종업 1~5 6학년	13 20 27 27 학년 2 학년 2 학년 3교	14 21 28 2실식( <sup>C</sup> 시 원 선	15 22 29 미급식) 출:12.	9 16 23 30	21 28	15 22 29	9 16 23 30	10 17 24 31	11 18	12 19	13 20	11 18 25 ■ 설 ■ 대	12 19 26 날연휴 체공휴 일절:	13 20 27 章: 2.9 章일: 2	14 21 28 ~2,11 2,12	8 15 22 29	9 16 23	10 17 24
12 19 26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력개	8 15 22 29 <sup>발평</sup>	9 16 23 30 가기간	10 17 24	11 18 25 1~)	10 17 24 31 290	11 18 25 (금) 24 전 024 전	12 19 26 종업 1~5: 6학년 교 학	13 20 27 27 학년 2 학년 3교 남생 임	14 21 28 얼식(다시 시 원 선 출:12.1	15 22 29 미급식) 출:12. 4	9 16 23 30	21 28	15 22 29	9 16 23 30	10 17 24 31	11 18	12 19	13 20	11 18 25 ■ 4 ■ 11 ■ 14	12 19 26 날연휴 제공휴 일절:	13 20 27 차 2.9 차 2.9 차 3.1 시합	14 21 28 ~2.11 2.12 범식, 15 5학년	8 15 22 29	9 16 23	10 17 24
12 19 26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력개	8 15 22 29 <sup>발평</sup>	9 16 23 30 가기간	10 17 24	11 18 25 1~)	10 17 24 31 290 20 12.	11 18 25 (금) 24 전 24 전 30-2.	12 19 26 조업 1~5: 6학년 교 학 상송부위	13 20 27 27 학년 2 현 3교 남생 임 원 선를 학년 일	14 21 28 2실식( <sup>C</sup> 시 원 선	15 22 29 미급식) 출:12. 4	9 16 23 30	21 28	15 22 29	9 16 23 30	10 17 24 31	11 18	12 19	13 20	11 18 25 ■ 4 ■ 11 ■ 14	12 19 26 날연휴 체공휴 일절:	13 20 27 차 2.9 차 2.9 차 3.1 시합	14 21 28 ~2.11 2.12	8 15 22 29	9 16 23	10 17 24
12 19 26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력개	8 15 22 29 <sup>발평</sup>	9 16 23 30 가기간	10 17 24	11 18 25 1~)	10 17 24 31 290 ■ 20 ■ 20 12.	11 18 25 (금) 24 전 24 년 30-2 탄절:	12 19 26 조업 1~5 6학년 교 학 강송부위 29	13 20 27 27 학년 2년 3교 학년 2년 3교 학년 연원 선물	14 21 28 얼식(다시 시 원 선 출:12.1	15 22 29 기급식) 출:12. 4	9 16 23 30	21 28	15 22 29	9 16 23 30	10 17 24 31	11 18	12 19	13 20	11 18 25 ■ 4 ■ 11 ■ 14	12 19 26 날연휴 제공휴 일절:	13 20 27 차 2.9 차 2.9 차 3.1 시합	14 21 28 ~2.11 2.12 범식, 15 5학년	8 15 22 29	9 16 23	10 17 24
12 19 26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력개	8 15 22 29 <sup>발평</sup>	9 16 23 30 가기간 작간:1	10 17 24 £(11. 1.27~	11 18 25 1~) 12.1	10 17 24 31 290 ■ 20 12. ■ 45 ■ 25	11 18 25 (금) 24 전 24 년 30-2 탄절:	12 19 26 조업 1~5: 6학년 교 학 상송부위 29 12.25 6 수입	13 20 27 27 학년 2 호년 3교 학생 임 원 선활 학년 2 3 교 학년 2 3 교 학년 2 3 교 학년 2 3 교 학년 2 3 교 학년 2 3 교 학년 3 교 학년 2 3 교 학년 3 교 학 학년 3 교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14 21 28 일시( 시 원 선 출:12.1 간방학(6 류일	15 22 29 미급식) 출:12. 4	9 16 23 30 7 학교	21 28 ■ 사	15 22 29 배해첫 량휴	9 16 23 30 날: 1	10 17 24 31	11 18 25	12 19 26	13 20 27	11 18 25 ■ 4 ■ 11 ■ 12 ■ 12	12 19 26 날연휴 제공휴 일절:	13 20 27 차 2.9 차 2.9 차 3.1 시합	14 21 28 ~2.11 2.12 범식, 15 5학년	8 15 22 29	9 16 23	10 17 24
12 19 26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력개	8 15 22 29 <sup>발평</sup>	9 16 23 30 가기건 작가기건 작가기건	10 17 24 上(11. 1.27~	11 18 25 1~) 12.1	10 17 24 31 290 ■ 20 ■ 20 12.	11 18 25 (금) 24 전 024 전 024 전 30-2 탄절: 탁기 중	12 19 26 종업: 6학년 교 학 상송부위 12.25 수업	13 20 27 27 학년 2 한년 1 한년 선 한년 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4 21 28 얼식(다시 원선 출:12.1 방학(6 후일 25	15 22 29 기급식) 출:12. 4 2일)	9 16 23 30 7 학교 ት) ~	21 28 ■ 시 장재 8월	15 22 29 배해첫 라취	9 16 23 30 날: 1	10 17 24 31 1.1	11 18 25	12 19 26 일간	13 20 27	11 18 25 ■ 대 ■ 삼 20 3.	12 19 26 날연후 체공후 일절: 24년 4(월)	13 20 27 차 2.9 차 2.9 차 3.1 시합	14 21 28 ~2.11 2.12 범식, 15 5학년	8 15 22 29	9 16 23	10 17 24
12 19 26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즉력개 술전 <sup>4</sup>	8 15 22 29 발평: 기회주	9 16 23 30 パパス ご:1	10 17 24 上(11. 1.27~	11 18 25 1~) 12.1	10 17 24 31 290 20 12. 対	11 18 25 (급) 24 전 2024 전 30-2. 탄절: 202 202	12 19 26 종업: 6학년 교 학 상송부위 12.25 수업	13 20 27 27 24 3교 생생 임 선원 선원 학년 2 3교 12일수 7월	14 21 28 얼식(다시 원선 출:12.1 방학(6 후일 25	15 22 29 1급식) 출:12. 4 (2일) 일(호 일(토	9 16 23 30 7 학교 ት) ~	21 28 ■ ^ 장재 8월 202	15 22 29 배해첫 라취	9 16 23 30 날: 1 일(! 2 2	10 17 24 31 1.1 목)	11 18 25 25	12 19 26 일간	13 20 27	11 18 25 ■ 대 ■ 삼 20 3.	12 19 26 날연추 제공휴 일절: 24년 4(월)	13 20 27 후: 2.9 (12) 3.1 시합 1~ 6학	14 21 28 ~2.11 2.12 14시, 1 155학년 1년 35	8 15 22 29 입학식 2교시	9 16 23	10 17 24
12 19 26	13 20 27 고원능	14 21 28 력개	8 15 22 29 발평: 기회주	9 16 23 30 가가기간 작가기간 호 호	10 17 24 (11. 1.27~	11 18 25 1~) 12.1	10 17 24 31 290 20 12. 성 2 20 12. 학 : 학 :	11 18 25 25 24 전 24 전 2024 변절: 탄절: 202 202	12 19 26 종업 1~55 6학년 29 12.25 홍 수압 23년 23년	13 20 27 27 4생 임원 선률 전환 학생 임원 전환 학생 임원 수 전원 구조 구물 12을 구경을 기업을 가장하는 기업을 가장하	14 21 28 2월식(다시) 원선(출: 12.1 강방학(6) 휴일을 25	15 22 29 기급식) 출:12. 4 4 일(호 일(토	9 16 23 30 7 학교 ) ~	21 28 ■ 사 장재 8월 202	15 22 29 배해첫 라 17 24년	9 16 23 30 날: 1 일(! 2을	10 17 24 31 1.1 목)	11 18 25 25	12 19 26 일간 (목)	13 20 27	11 18 25 ■ 설 ■ 대 ■ 삼 20 3.4	12 19 26 날연추 제공휴 일절: 24년 4(월)	13 20 27 후: 2.9 (12) 3.1 시합 1~ 6학	14 21 28 ~2.11 2.12 설식, 설식, 년 35	8 15 22 29 입학식 2교시	9 16 23 (미급소	10 17 24
12 19 26 • 5	13 20 27 <sup>1원능</sup>	14 21 28 즉력개 술전 <sup>4</sup>	8 15 22 29 발평: 사회주	9 16 23 30 30 7F77 2 32::11	10 17 24 (111. 1.27~	11 18 25 1~) 12.1	10 17 24 31 290 2 20 12. 성을 2한 12.	11 18 25 (급) 24 전 2024 본 30-2. 탄절: 202 202	12 19 26 종업 1~5·6학년 12.29 12.25·8 수입 23년 5월	13 20 27 27 27 26 27 3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14 21 28 28 24 원 선 원 선 12.1 12.1 12.1 12.1 12.1 13.1 14.1 15.1 16.1 16.1 16.1 16.1 16.1 16.1 16	15 22 29 미급식) 출:12.4 4 일(호 일(호 일(토	9 16 23 30 7 가 하고 ~	21 28 ■ 사 장재 8월 202	15 22 29 해하첫 라지 17 24년 7	9 16 23 30 날: 1 일(년 일(년	10 17 24 31 1.1 대한 기계	11 18 25 [24 <sup>약</sup> 9일	12 19 26 일간 (목) 일수	13 20 27	11 18 25 ■ 설 ■ 대 ■ 삼 20 3.4	12 19 26 날연추 제공휴 일절: 24년 4(월)	13 20 27 27 후: 2.9 3.1 시압 6학	14 21 28 ~2.11 2.12 14시, 1 5학년 1년 33	8 15 22 29 입학식 2교시 교시	9 16 23 (미급4	10 17 24

# 불법찬조금・품 근절 및 청탁 금지를 위한 연수

### 1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u>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u>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2 불법찬조금의 유형

- 가. <u>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u>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나.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다. <u>학교장 등이</u>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 성하는 행위
- 라.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3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u>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u>
- O 매스컴 등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정직한 교육자 사기 저하
- O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학부모 간 신뢰 하락
- O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4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161~4

[시흥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 https://goesh.kr) 참여민원/공익제보센터/불법찬조금신고센터

○ 전 화 : 감사담당관 031-488-2403~6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기존

변경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10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선물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5만원

5만원

농수산불 가공품 10만원



3만원

3만원

식사,다과,주류,음료등 기존과 같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끔)은 10만원까지 가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인
- · 지도 · 단속 대상자
- · 입찰 상대방
- · 인사 · 평가, 감사대상자
- · 고소 · 고발인, 피의자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작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자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모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 5만원 축의금 조의금 3만원+화환 조화 7만원



축의금-조의금 7만원+회환-조화 3만원

# 교권 침해 예방 교육

### 1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성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방해, 교육활동에 부당한 간섭 등)에 관한 예.
-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2

-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 당신의 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해하겠다는 경우
-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 같은 ○○놈', '○○년',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
- 특정 교사에 대하여 'A선생은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학생이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음화제조·반포)
- 학생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보다 가중 처벌된다.
-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구체적 협박이 아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전화, 이메일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나 문자 또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찾겠다고, 1시간 동안 교사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가 교실 문을 안에서 잠그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 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의 경우
- 육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는 행위
- 언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 -수업 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 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며 말하는 행위
- -언어적으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쉬는 시간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한대!'라고 하면서 휘파람을 분 경우
- -수업시간에 성매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 교사가 설명하는 중 학생이 교사에게 "경험담?" 이냐고 한 경우
-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 -칠판이나 종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 소속학교의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 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소속학교의 학부모가 자녀의 사적인 일을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공교육정상화법의 연혁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395호, 2014. 3. 11., 제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0호, 2019. 3. 26., 일부개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특별법
- 이 법은 특별법으로서 선행교육, 선행학습에 관하여「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필요성

-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학생의 인지 및 정서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
- 초등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을 통한 평가 점수의 획득보다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탐구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신장이 더욱 중요
- 선행교육은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비를 증가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1) 선행교육(교육과정 편성·운영)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2) 선행학습 유발행위(평가)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 점검시기: 학기별 2회 이상
- 점검교과: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수학
-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2)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1. 2학년 영어는 예외
- 3)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4)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 ○ 학부모

- Q 공교육정상화법은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즉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시험 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 ○ 교사

-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 ℚ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A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님.
- **Q**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 A 그렇지 않음. 수준별 수업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 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함.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Q 초6~중1, 중3~고1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A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됨.
- Q 교과 관련 <mark>동아리 활동에서</mark>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 A 교사가 동아리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등)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 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됨.
  - 단, 해당 학기에 편성 운영되는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범위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에 따른 선행 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함.
  -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 습한 내용을 일부의 소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음.
  - 또한 동일 교과목을 두 학기 이상 편성했을 때 첫 번째 학기 기말고사 이후의 내용을 두 번째 학기의 중간고사에 출제할 수 있음.
  - 다만, 진도표와 평가 계획에 이와 같은 문항 출제 계획을 명시해야 함.

- Q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서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 A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임. 이때,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보 공시의 수정 없이 학교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는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지도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도 「공교육정상화법」위반임. 그러나 한학기 안에서 지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는 경우는 「공교육정상화법」위반이 아님.
-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A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다음 학기에 수학 교과에서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함.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반드시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Q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 행교육에 해당되나요?
- A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임. 예를 들어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 진도 계획에 맞추어 출제해야 함.

#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안내

# **1** 경기 초등 성장중심평가는 어떤 평가인가요?

성장중심평가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성장중심평가는 서열화나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여 참된 학력과학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성장하는지 확인하는 평가로 논술형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며, 정의적 능력 평가와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 참여와 협력을 중시합니다.

## 2 왜 성장중심평가를 시행하나요?

성장중심평가는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성장중심평가를 통해 학생은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와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는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의 성장중심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과별 성취기준 · 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기 초등 성장중심평가는 일제식 정기고사(중간 · 기말 고사 등)를 실시하지 않으며, 수행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수준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파악합니다. 수행평가는 논술형,서술형, 구술, 토의 · 토론, 보고서, 포트폴리오, 실험 · 실습, 실기,자기평가, 동료평가, 정의적 능력평가,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등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며,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업 중이루어집니다. 학년 초에는 학생의 발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회성 진단평가가 아닌 진단활동 주간을 운영합니다.

### 원격수업에서도 성장중심평가가 가능한가요?

원격수업에서도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성장중심평가는 학생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 태도나 참여도 등 다양한 활동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격수업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학생의 수행 동영상을 통해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여 학생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5 성장중심평가로 학생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성장중심평가는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에 대해 교사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부담을 낮춥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 수준과 발달 상황 등을 고려한 성장중심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수업 과정 중에 평가하는 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며, 별도의 과제형 평가는 지양합 니다.
-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평가하고,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모둠별로 평가할 때는 개별 학생에 대한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 6 성장중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되나요?

평가계획은 사전에 공지하고, 결과 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학교는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근거하여「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평가 계획과 시행,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학기별 학년(학급)평가 계획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평가결과는 학생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정한 방법과 시기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 산출물과 성장중심 가정통지를 제공합니다.

# 성장중심평가에서 평가되는 모든 것이 성적에 반영되나요?

학생이 수행한 과정과 내용을 성적으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성장중심평가는 학생의 학습을 개선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과정중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사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평가의 모든 내용과 결과는 수치화(점수화)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 수준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파악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실있게 기재합니다.

# 8 성장중심평가의 계획과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학교의 학기별·교과별 평가 계획은 「학교알리미」에서 해당 학교를 검색한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학교에서 안내하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도 안내받으실 수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생활기록부 등 학교생활정보는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여울초 보호자님들께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참된 학력과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전면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성장중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가 되도록 학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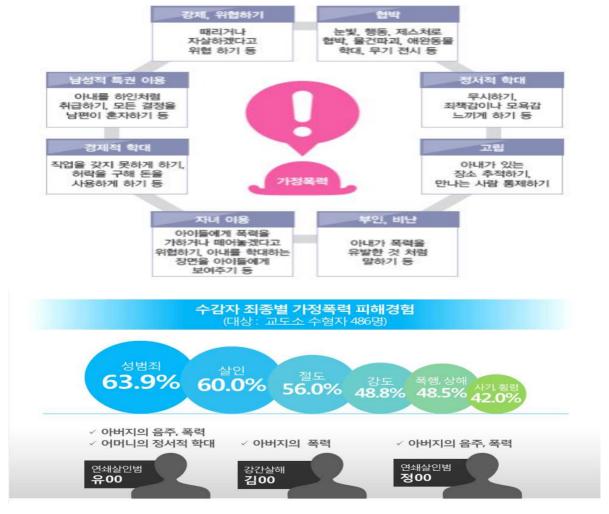
### 1 가정폭력이란?

-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 2 가정폭력의 파급력

학대의 현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존감, 자아상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며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지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되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방치하고,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다시 타인에게 정서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u>가정폭력은 한 가정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폭력으로 확산되거나 다음 세대로</u> 대물림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출처: 신동욱(2003). 아동, 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경찰대 치안정책 연구소

####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징

- 아내, 자녀, 부모 등과 재산과 같이 모두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김.
- 가정에서 자신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함
- 아내에 대한 성 역할이 고정화되어 있음
- 밖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참고 숨기지만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분노를 표출하여 폭력을 행사함
- 다양한 폭력은 아내와 자녀를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행동임
- 폭력행위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여김

### 4 아동학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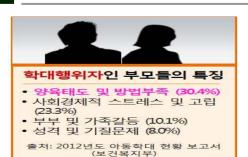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 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u>아동의 보호자가</u>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

♣ 아동이란? ☞ 만 18세 미만 (즉, 고등학생도 포함)

학대 유형	학대 내용	처벌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 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b>의도적으로</b> <b>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b>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b>아동을 대상으로 하는</b> 모든 성적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 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임·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b>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b>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

5



- ▶ 매년 학대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
- ▶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 이상

#### 요인

정신장애 / <mark>학대경험</mark> / 약물 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 결과

-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에게 싶은 상처
-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2014. 1.28 공포, 2014. 9.29 시행)

1.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 5. 현장조사권 강화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최장4개월)
-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 ◎ 신고 및 상담

- 경찰청 112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kr)
- 사이버112(cyber112.police.go.kr)

### 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자녀가 가진 능력이나 발달 이상으로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다양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 습득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체벌과 훈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언행은 신중히 생각하신 후에 해주세요.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서적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1 학교폭력이란?

법률 제2조(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 학교폭력의 이해

#### 1.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뱉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일까요?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2.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일진회'등 청소년 폭력써클에 의한 집단폭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학교 일진회와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전화 117, 문자 #0117)

학교폭력의 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가해학생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하기(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 1. 자녀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세요.
- 2. 매일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 3.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 4. 휴대폰 안 쓰는 시간 약속하기 등 건강한 휴대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세요.
- 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 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도록 당부해주세요.
- 7. 자녀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주세요.
- 8.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 9. 학부모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10.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하세요.

### 4 학교폭력 피해징후 알아보기(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켜봐 주세요)

- 1. 늦잠을 자거나 몸이 자주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3.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무엇인가에 열중하지 못한다.
- 4.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다.
- 5.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새로 사달라고 한다.
- 6.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휴대폰 요금이 많아진다.
- 7. 학교나 학원을 가기 싫어하거나 옮기고 싶어 한다.
- 8. 자녀가 휴대폰을 보고 당황하거나 불안해한다.
- 9.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6

####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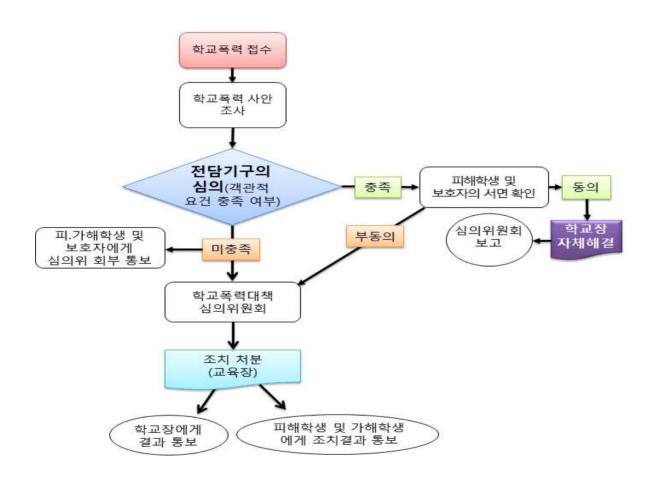
-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고파이지 하세요. 전세되피, 다 나, 단 나, 에게는 에는 나이 아름이다
-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절래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 학교폭력,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2020. 3. 개정)



<학교폭력 신고& 상담> 안전 Dream 경찰긴급지원센터(24시간) 117,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 출결 및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 1 학생 전출 절차

전출 절차

- 전 가족 이주로 인해 전학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 행정실에 들러 우유급식비 환급 또는 납부 등의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 전출 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접수증을 교부 받고 해당 학교에 제출합니다.
- 전입학 관계 서류는 학교끼리 연락하여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 2 경조사별 출석 인정 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 망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신청서 작성 → <b>신청서 제출 (3일전)</b> → 결재(학교장 허가) → 허가 통보 →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절차	→ 보고서 제출( <b>7일 이내</b> ) → 출석인정 처리
신청서 및 보고서	- 신청서의 체험학습 계획에는 학습목적이 드러나게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 체험학습이 끝나면 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합니다.
출석 인정 기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현행 57일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학년도)인 20일 이내로 운영합니다. (가정학습 포함) ※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확인: <a href="https://naver.me/55yVhEUd">https://naver.me/55yVhEUd</a>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법정 감염병 감염 시 출석 인정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전화로 먼저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시고, <u>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진료소견서를 학교에</u> 제출하면 결석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등교중지를 시킵니다.

- ▶ 감염병 아동 등교중지 절차
- 1. 가정에서 발생시 → 유선으로 연락 → 치료 후 의사의 완치 진단 후 → 등교함 (등교 시 진료확인서나 진료소견서를 학교에 제출)
- 2. 학교에서 발생시 → 감염병 의심아동이 학교에 등교 시 → 보건교사 면담 후 의심아동 하교시킴 → 감염병으로 의사 진단 후 학교로 유선 연락 → 치료 후 의사의 완치 진단 후 → 등교함 (등교 시 진료확인서나 진료소견서 제출)

### 5 결석계 작성 안내

천재지변에 의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와 위 2,3,4번의 **이외의 결석 시(질병, 개인사정) 결석 후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과정  $\qquad$  결석 사유 발생  $\rightarrow$  결석계 작성, 담임교사에게 제출  $\rightarrow$  담임확인  $\rightarrow$  학교장 확인  $\rightarrow$  출결처리

(※결석계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1 학생 봉사 활동이란?

자원봉사활동의 기준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을 충족하는 활동으로, 이웃돕기활동·환경보호활동·캠페인활동 3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2 학생 봉사 활동 인정 기준은?

학생 봉사활동은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해당 운영 계획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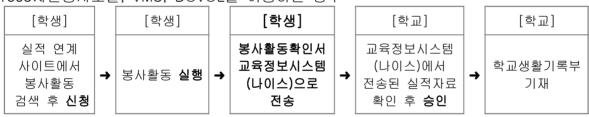
### 3 학생 봉사 활동 인정 시간은?

구 분	평일(4교시)	평일(6교시)	휴업일(토, 공휴일)
최대 인정시간	4시간	2시간	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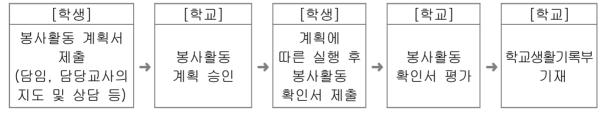
- 최대 인정시간 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시간 단위(분 단위 절사)로 인정합니다.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4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은 필요 없으나, 활동 실시 전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까지 완료했을 때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 활동 실시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봉사활동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NEIS 학생·학부모 서비스 이용 안내

### 1 NEIS 학생·학부모 서비스란?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는 자녀의 성적, 출석, 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정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학교·학생·학부모의 소통창구입니다.

### 2 NEIS 학생서비스·학부모서비스 접속방법



▲ NEIS 학생·학부모서비스 접속 절차

※ 학부모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자녀 등록) 후 담임 승인 필요(학부모 일치 여부 확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생정보 (학생부. 성적 등) 조회 시 인증서 등록 필요

### 3 NEIS 학생서비스·학부모서비스용 인증서 무료 발급 안내

인증서가 필요한 메뉴(학생부, 성적 등)를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학생·학부모서비스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학생·학부모 인증서 발급 서비스(keris.signgate.com)에서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절차

### 4 사용자 안내서 및 홍보영상 안내

자세한 서비스 이용방법을 보시려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와 학생·학부모 인증서 발급 서비스(keris.signgate.com)을 참고하세요.

#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학교 전자계약 추진 안내

### 1 학교에서 물건 구입, 공사, 용역 계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물건 구입, 공사, 용역 계약을 추진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 전자계약이란?

• 학교·공공기관이 물품 구입, 공사·용역의 계약 추진 시, 업체가 학교·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입찰 및 계약, 대금청구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전자계약 추진 배경 및 장점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학교·공공기관은 업체와 직접 만나 계약업무를 추진해야 되므로 투명성 및 청렴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여러 업체의 경쟁이 필요한 경우, 전자입찰 프로그램 사용하여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임
- 학교·공공기관에서 물품, 공사, 용역을 추진하는 업체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

## 4 전자계약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지정정보처리장치)

사이트	사용기관	기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시 이용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급식 물품 구입 시 이용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처분 시 이용

우리나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6년에는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에서 전 세계 공공기관 중에서 IT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례로 선정되어 'Global IT Excellence' 수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활성화 전자상거래 이사회(AFACT)에서 공공분야 전자상거래 부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07 e-ASIS'를 수상하며 최고의 전자정부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해외 총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으며, 25개국(27건)과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조달청블로그 발췌-

한여울초는 전자계약을 통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투명성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1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취미·흥미·진로와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다.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 강사 채용 및 방과후학교 전반에 걸쳐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 2 방과후학교 운영 흐름

방과후학교 수요조사 강좌 개설 및 수강 신청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방과후학교 학생평가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 방과후학교 세부 운영 계획

구 분	기간	비고
1기(3텀)	2023년 3월 20일 ~ 6월 23일	보강기간: 6월 12일 ~ 6월 23일
2기(3텀)	2023년 6월 26일 ~ 10월 6일 (여름방학 포함)	방과후 방학: 7월 31일 ~ 8월 4일 보강기간: 9월 25일 ~ 10월 6일
3기(3텀)	2023년 10월 9일 ~ 2024년 1월 19일	보강기간: 1월 2일 ~ 1월 19일 (겨울방학 포함)

- \*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과후 방학을 1주일간 실시함.(여름휴가철 학생 및 방과후강사의 휴식을 보장)
- \* 각 기별 보강기간은 2주를 기본으로 하고, 3기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인하여 보강 기간을 3주로 계획함.
- ※ 1기당 3텀(12주)으로 운영함. (1텀=4주)

4

• 2022학년도 강사를 재계약하여 운영하되, 학생 하교 시간, 요일별 분산,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함.

순	부서	수강 요일	대상학년	시간	장소	수강료 강사료 (수용비 포함)+교재교구비)	비고				
	클레이&	81001	1~2학년	13:50~15:10	실과실	◈강사료: 94,500원(31,500원×3텀)					
1	미니어처 (정원:25명)	월요일	1~6학년	15:20~16:40	(4층)	◈재료비: 45,000원(15,000원×3텀)					
2	요리	화요일	1~2학년	13:50~15:10	실과실	◈강사료: 94,500원(31,500원×3텀)					
	(정원:24명)		3~6학년	15:20~16:40	(4층)	◈재료비: 84,000원(28,000원×3텀)					
3	방송댄스	화요일	1~2학년	13:50~15:10	다목적실	◈강사료:					
3	(정원:25명)	지표트	1~6학년	15:20~16:40	(2층)	94,500원(31,500원×3텀)					
1	음악줄넘기	A 0 0 1	1~2학년	13:00~14:20	체육관	◈강사료:					
4	(정원:28명)	수요일	1~6학년	14:30~15:50	(2층)	78,750원(26,250원×3텀)					
5	5 컴퓨터 (정원:28명)	수요일	1~2학년	13:00~14:20	컴퓨터실 (2층)	◈강사료: 81,900원(27,300원×3텀) ◈교재비:					
			3~6학년	14:30~15:50		(저학년)10,000~12,000원 (고학년)12,000~18,000원					
6	c 토탈공예		1~2학년	13:00~14:20	음악실2	◈강사료: 78,750원(26,250원×3텀)					
0	(정원:25명)		1~6학년	14:30~15:50	(4층)	◈재료비: 45,000원(15,000원×3텀)					
7	로봇과학	목요일	1~2학년	13:50~15:10	과학실	◈강사료: 78,750원(26,250원×3텀)					
/	(정원:22명)		1~6학년	15:20~16:40	(3층)	◆교구비: 75,000~80,000원					
	독서토론		1~2학년	13:50~15:10	음악실2	◈강사료:					
8	논술 (정원:25명)	목요일	3~6학년	15:20~16:40	(4층)	94,500원(31,500원×3텀)					
0	축구	7001	1~2학년	13:50~15:10	운동장	◈강사료:					
9	(정원:24명)	금요일	3~6학년	15:20~16:40	(체육관)	81,900원(27,300원×3텀)					
10	10 주산암산	금요일	1~4학년	13:50~15:10	미술실2	◈강사료: 81,900원(27,300원×3텀)					
10	(정원:25명)	U.H.E	1~6학년	15:20~16:40	(3층)	◈교재비:16,000원~24,000원 (주판은 개별준비)					
	바둑	760	1~4학년	13:50~15:10	음악실2	◈강사료: 94,500원(31,500원×3텀)					
11	11 (정원:28명)					금요일	1~6학년	15:20~16:40	(4층)	<ul><li>◆교재비: 24,000~37,000원</li><li>(12,000~13,000원×3텀)</li></ul>	

<sup>※</sup> 방학 중에는 시간은 오전으로, 장소는 학교 사정(학생 안전 관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안내

#### 1 정보통신윤리란?

▶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행위 하는데 필요한 규범 체계를 말한다.

#### 2 정보통신윤리는 왜 필요한가?

- ▶ 사이버 공간을 유익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 ▶ 정보통신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해준다.
-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 ▶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컴퓨터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

#### 3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 ▶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 친해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 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4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 ▶ 개인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을 받아 보관하게 한다.
-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 ▶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 5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 ▶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온라인상의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과 함께 논해보고 주변의 조언도 참고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 ▶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는다.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는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현재 성인용 사이트를 차단하고 걸러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통제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다.
-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킨다.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생활지도

- ▶게임관련 정부규제 제도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함. 인터넷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함.
  - 게임시간 선택제
    - : 학생들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다라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부모가 요청한 시간에는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없음. 부모님이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활용방법 : 게임문화재단(www. gamecheck.org)에서 학생의 게임이용 실태 파악학생과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게임 이용시간, 게임종류)→게임사이트에 방문하여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신청→ 게임회사는 학생에게 사실 확인 후 게임시간 제한

## 복합특수학급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이해에 대한 안내

#### 복합특수학급이란?

본교에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 1학급 총 6학급의 전일제 특수학급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편제와 시수를 동일하게 따르며 수정된 성취기준에 의 해 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 1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8. 4. 11 시행)

####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 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고용(제10조, 제11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 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 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해야한다.



####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

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 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 및 이 용을 금지·거부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 다.



#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제20, 제21조)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됨.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맟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 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



####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 라고 말하는 때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그 사람의 많고 많은 특징 중에 하나일 뿐!

피부가 까만사람, 하얀사람, 머리길이가 긴 사람, 짧은 사람, 화사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 어두운 옷을 좋아하는 사람, 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런 특징들은 장애가 있건 없건모두 다양합니다. 다양성에는 인종, 키, 성별, 나이, 취미, 특기, 취향 등등과 더불어 장애까지도 포함됩니다.



####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 1. 친구를 부르고, 지칭하는 말은 친구의 예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친구를 불러주고, 다른 말은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친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다가가도록 해주세요. "♡♡야, 안녕?"
- 2.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소중한 부모님의 자녀를 뚫어지게 보거나 수군댄다면 기분이 어떨지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야기 나눠주세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만이 아닌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을 위한 학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2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 안건 보고

#### 보고1. 2022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보고 건

- a. 산하조직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운영
- 깃발, 조끼, 경광봉, 정복 등 운영 물품 구입
- 녹색학부모회 등교 지도
- 학부모폴리스 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순찰
- b. 학부모회 연수
- 총 3회에 걸쳐 학부모회 연수 진행
- 1회: 양말목 공예 체험, 친환경 비누 체험, EM 체험
- 2회: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 3회: 수제 크리스마스 트리 앙금 쿠키 만들기
- c. 캠페인 진행
- 한여울초 화단 가꾸기 환경미화 진행
- 총 3회에 걸쳐 학부모회 주관 캠페인 진행
- 녹색어머니 총연합회 캠페인 진행
- 학부모폴리스 주관 캠페인 진행

#### 보고2. 예산 및 결산 보고 건

세부사업명	수입		지	출	비고
	학부모회 운영비	3,150,000원	학부모회 시설 및 운영 물품 구입 건	1,197,850원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회 학부모회실 시설 구축 및 운영 물품 구입
			학부모회 연수 (총 3회)	650,450원	학부모회 연수 물품 구입
학부모 협력	교육청 지원	500,000원	캠페인 (총 5회)	1,596,980원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새학년 새학기 응원 캠페인, 녹색어머니 총연합회 캠페인, 학부모폴리스-시흥경찰서 캠페인
	3,600,000원		회의 참석비	170,000	연합회 회의 참석
			합	계	3,615,2800원
			잔 액		34,720원

### 보고2. 2022년 감사 보고 건

구분	내용	비고
활동 분야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전년도 학부모회 업무와 회계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회 활동 분야에서는 학부모회 임원선출, 학부모회 활동 계획서 의결, 대의원회 개최했으며, 학교 화단 가꾸기를 위한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전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황에 맞게 기능별 학부모의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3차례의 다양한 주제로 한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주관으로 총 3회의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 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의 해제와 일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 당해 연도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회계 분야	회계 분야에서는 지출 증빙 서류와 회계 장부가 일치하여 학부모회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운영되었습니다.	

# 2022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 2023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사항

- 1.개정 근거
- 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11.2. 일부개정)
- 2.개정 주요 내용
  - 가.제4조(회원) 수정
- 나.제5조(임원의 임기) ②항 내용 추가 및 ③항, ④항 신설
- 다.제7조(임원의 직무) ③항 내용 추가
- 라.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③항 명칭 변경
- 마.제9조(총회) ⑦7항 신설
- 바.제10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①항 내용 변경, 1~6항 내용 일부 수정
- 3.개정안 의결
- 가. 개정안 내용 홈페이지 및 이알리미 발송
- 나. 사전에 전체 학부모의 의견 수렴 후 학부모 총회에서 의결

개정항목	개정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4조 (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 호)로 한다.	회원은 본교 및 병설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 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한여울조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회 통합 운영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②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 투표 등)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 임원선출을 위하여 대의원회 추천으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가성하고,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가성하고,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임원 선출 절차 규정 명시, 총회 미참석 학부모 투표참여 방법 확대, 총회 개최 어려운 경우 임원 선출 방법 명시

개정항목	개정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7조 (임원의 직무)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 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 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 개하여야 한다. <u>감사의 역할은 회장,</u>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한다	감사의 역할 명료화
제8조 (학부모회 의 조직)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학부 모회, 어머니폴리스 등을 둔다.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학부모회, <u>학부모</u> 폴리스 등을 둔다.	명칭 변경
제9조 (총회)		① 총회 소집 공고시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전투표를 해야 할 경우 근거를 마련한다.	신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사항 3. 임원의 선출 4.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 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및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2. 학부모회 예·결산 보고 3. 학부모회 감사 보고 4. 학부모회 규정 개정 5. 학부모회 임원 선출 6.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7.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 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에서의 보고 및 의결 내용 명료화를 위해 내용 변경

# 2023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학부모회의 명칭은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고, 한여울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자원
-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④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 및 병설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 제5조(임원 등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u>다만,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 선</u>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 투표 등)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 ④ 학부모회 임원선출을 위하여 대의원회 추천으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u>감사의 역할은</u>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한다
-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병설유치원 대표를 둔다.
-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등을 둔다.

#### 제9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회원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의제,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총회 소집 공고시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전투표를 해야 할 경우 근거를 마련한다.

####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및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 2. 학부모회 예·결산 보고
  - 3. 학부모회 감사 보고
  - 4. 학부모회 규정 개정
  - 5. 학부모회 임원 선출
  - 6.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7.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특수학급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 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학부모회 규정 재·개정안 발의
- ② 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보고
- ③ 학부모회 세부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⑤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⑥ 임시총회 소집요구
- ⑦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13조(학년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제14조(학급 학부모회)

- ① 학급 학부모회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급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급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급 학부모회는 학급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급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 제 16조(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 제18조(재정지원 등)

-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지원비 등으로 한다.
-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회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